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8도14492 공직선거법위반, 증거인멸교사
피 고 인 피고인
상 고 인 피고인
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
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. 8. 29. 선고 (창원)2018노128 판결
판 결 선 고 2018. 12. 27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.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무원의 지위 이용, 선거운동,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법리

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_____

 대법관 조희대 _____

 대법관 민유숙 _____

주 심 대법관 이동원 _____